## 8. 행정심판 청구 등의 취하

**행정심판 청구 등의 취하** 청구인 또는 참가인은 심판청구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까 서면으로 각각 심판청구 또는 참가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(행정심판법 제42조 제 1항, 제2항).